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(변재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382

발의연월일: 2022. 1. 13.

발 의 자 : 변재일 · 안규백 · 위성곤

윤관석 • 이원욱 • 이장섭

이정문 · 임호선 · 정성호

정태호 · 조정식 · 한준호

홍성국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양자(量子)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성, 계측, 전송, 저장, 처리하는 양자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, 이와 관련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 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일부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임.

현재 우리나라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만 일부 진행되어 있는 상황으로, 향후 양자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기술 격차를 좁힘으로써, 향후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양자 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, 기반,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,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, 기반,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촉진,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제1조).
- 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양자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다. 양자기술 관련 정책을 심의·조정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7조).
- 라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,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도록 함(안 제1 1조부터 제13조까지).
- 마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계획을 수립하고, 양자클 러스터를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0조부터 제3 6조까지).
- 바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진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

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).

사.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그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함(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).

법률 제 호

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, 기반,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 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,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"양자기술"이란 양자(量子)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성, 계측, 전송, 저장, 처리하는 기술로서, 양자(量子)역학적 효과를 기 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, 양자센서 및 소자, 양자컴퓨터 및 시뮬레이터 등과 같이 양자(量子)역학적 특성을 지닌 원자 등을 조작・분석・제어하여 구현한 물리적・화학적・생물학적 기능의 소재・소자(素子)・부품・시스템・소프트웨어 등을 만들어내는 기 초・응용 기술 등 과학기술 일체를 말한다.
- 2. "양자지원기술"이란 양자역학 원리를 직접 사용하진 않지만 양자 기술을 구현·운영·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, 부품, 장비 및 소

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.

- 3. "양자산업"이란 양자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, 제작, 생산하거나,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4. "양자클러스터"란 양자기술 관련 신기술의 창출 및 확산, 인력 양성,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, 연구소, 대학 등을 상호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.
- 5. "공공기관 등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- 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 - 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
 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기술 및 양자산 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 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기술의 발전이 소관 사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야 한다. 또한, 양자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 요소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려 기관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.
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양자기술에 관하여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 - ② 제30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. 다만, 「국토기본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장 양자기술의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

- 제5조(양자종합계획의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(이하 "양자종합계획" 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양자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
 - 2.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양자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현황
 - 4. 양자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전략 및 투자계획
 - 5. 양자기술 연구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
 - 6.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 - 7. 창업 및 벤처 지원, 연구 성과의 확산 및 기술사업화 등 양자산 업 진흥을 위한 방안

- 8.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인력 연계 방안
- 9. 양자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연구성과의 유출방지 방안
- 10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표준화와 특허 등에 관한 사항
- 11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국제협력, 양자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
- 12. 그 밖에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
-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, 제7조제1항에 따
- 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할 수 있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·연구계·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.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양자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

행하여야 한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7조(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양자기술 관련 정책을 심의·조 정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둔다.
 - ②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,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.
 - ③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.
 - 1.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연구소 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

- 2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
- 3. 판사, 검사,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
- 4.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
- ④ 양자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·의결한다.
- 1. 양자종합계획의 확정
- 2.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
- 3. 제8조에 따른 양자기술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요구
- 4. 산업 및 보안 등에 대한 양자기술의 파급력 점검 및 평가
- 5. 양자기술진흥 및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
- 6. 제30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계획의 수립, 변경에 관한 사항
- 7. 양자클러스터 지정, 해제 및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양자기술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⑤ 양자전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- ⑥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⑦ 양자전략위원회,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 · 구성 · 운영
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- 제8조(제도개선 요구 등) ① 양자전략위원회는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, 양자산업 및 인력 등 양자기술과 관련된 법·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법·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실태조사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외 기술, 기업, 시장 규모, 표준화, 특허, 법, 제도 동향 등 관련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 등의 장, 연구기관, 기업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 공기관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· 통계작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·통계작성을 위

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④ 그 밖에 실태조사·통계작성의 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10조(정책연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·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장 양자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기반조성

- 제11조(양자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양자기술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양자 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양자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
 - 2. 양자지원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
 - 3.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및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공동연구 개발

- 4. 개발된 양자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
- 5. 양자기술간 또는 양자기술과 타 기술과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
- 6. 그 밖에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과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양자기술 분야의 기술지도(技術地圖)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에 관한 산업계·학계·연구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고, 연구개발 인력양성, 기술사업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12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·양도·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이 법에 따른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·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- 제13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연구개발, 양자 산업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·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자인력양성계획(이하 "양자인력계획"이라한다)을 세우고 제5조의 양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1. 양자인력계획의 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
 - 2. 양자인력의 수급전망
 - 3. 국내외의 양자인력 관련 주요 제도와 예산 현황
 - 4. 양자인력 양성 및 전환을 위한 교육·훈련 프로그램
 - 5. 양자인력의 정착 지원 방안
 - 6. 양자분야 연구인력의 교류 및 유치 등 국제협력 방안
 - 7. 양자연구 및 양자산업에 필요한 양자지원기술 전공자 및 정보통 신 전공자에 대한 인력전환 교육·훈련 프로그램
 - 8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의 정규과정 또는 비정규과정의 양자 교육에 관한 사항
 - 9. 그 밖에 양자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정부는 양자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양자기술을 집중하여 육성하는 대학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4조(전문가단체 교류지원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·연구계·학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,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단체의구성·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전담기관의 지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제10조에 따른 정책연구
 - 2.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지원
 - 3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
 - 4. 양자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
 - 5. 제20조에 따른 시범사업
 - 6. 제25조에 따른 표준화 지원
 - 7. 양자기술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
 - 8. 그 밖에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 및 제3항의 전담기관의 지정,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- 제16조(양자기술 전문가단체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·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기술 전문가단체를 구성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국가는 양자기술 전문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7조(양자 연구시설의 구축 및 활용촉진 등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을 위한 연구 장비·시설(이하 "연구 시설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구축, 운영, 지원 및 거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소재·부품·장비 등에 대해 산업계·학계·연구계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연구시설을 구축할 때에는 전문 운영인력의 확보 및 관리방안,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, 유지 ·보수 및 고도화 방안, 연구에 필요한 소재·부품의 수급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시설 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

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⑥ 제5항의 전문기관의 지정,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18조(양자기술 연구센터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·학계 및 연구계가 목적성을 갖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·발전시켜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기술 연구센터(이하 "양자 센터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양자 센터의 지정,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19조(양자기술 전문연구소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세계적인수준의 양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, 장기적인 기초기술의 연구와 산업계·학계 및 연구계와 연계한 인력의 양성·전환·정착에 기여하며, 공용 연구시설의 활용촉진, 산업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하여 양자기술 전문연구소(이하 "양자 연구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양자 연구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설립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.
 - 1.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4조부 터 제27조까지
 - 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

한 법률 | 제8조부터 제17조까지

- ② 정부는 양자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양자 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20조(실증 및 시범사업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양자기술의 상용화 및 관련 서비스의 확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증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증 및 시범사업 실시계획의 수립·추진 절차, 제 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, 그 밖에 실증 및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21조(민간 기술개발의 지원)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양자기술과 지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양자기술과 지원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양자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- 제22조(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양자기술의 사업화를 촉진

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게할 수 있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자기술 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,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23조(테스트베드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연구개발 지원,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, 국제표준의 인증·검증, 서비스의 개발 등을 위하여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·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, 시스템 또는 설비(이하 "테스트베드"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 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·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 확보의 필요성, 테스트베드의 활용 정도, 구축 비용대비 성과, 국가 지원의 필요성, 산업계·학계·연구계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매 5년마다 존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의 구축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.
- 제24조(양자기술정보체계의 구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효율적인 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·유통·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양자기술정보체계를 구축· 운영할 수 있다.
 - 1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현황
 - 2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기술이전, 특허, 표준 현황
 - 3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인력 수급 현황
 - 4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기업 현황
 - 5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소재・부품 수급 현황
 - 6. 국내 주요 연구 장비 등 국내외 시설에 대한 정보
 - 7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기술 연구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자기술정보체계를 원활하게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기술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자기술 정보 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양자기술정보체계의 구축, 운영 및 제2항

및 제3항에 따른 양자기술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,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- 제25조(양자기술 등의 표준화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개발·이전·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국내 및 국제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양자기술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
 - 2. 국내외 표준의 조사 · 연구개발 · 보급 · 확산
 - 3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양자기술 등의 표준화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,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26조(벤처·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) ① 정부는 양자기술 및 양자 지원기술 관련 기업의 벤처·창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벤처·창업의 육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

-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벤처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
- 2.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
- 3. 자금, 인력,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
- 4. 법률·경영·세무·특허 등의 상담
- 5.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,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·알선
- 6.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
- 7.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
- 8.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
- 9.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
- 10.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,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, 제4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다.
- 제27조(연구개발성과물의 보호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기술사업의 성과로 얻어지는 양자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

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.

- 제28조(문화의 확산 장려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 정부는 양자기술 및 산업 관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양자기술 연구개발, 기술·서비스 도입, 기반 구축, 양자산업 활성화, 제도 개선,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개인, 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, 포상 및 홍보
 - 2. 양자기술·서비스의 확산과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백서, 교육, 세미나, 행사, 전시의 개최
 - 3. 양자기술의 역사적·문화적 이해를 돕고, 양자기술·산업 활성화 사례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
 - 4.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기술 관련 문화의 확산을 위
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29조 (양자전환)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분석 결과를 제5조의 양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, 국정원장, 국방부장관 등은 양자컴퓨터의 발전 등 양자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한다.

제4장 양자클러스터

- 제30조(양자클러스터계획의 수립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 자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, 체계적인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양자클러스터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 - ② 양자클러스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양자클러스터의 지정, 운영, 해제 등 양자클러스터의 육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양자기술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

- 3. 양자클러스터의 대학, 연구소 및 기업의 인력의 양성,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
- 4. 양자클러스터의 대학, 연구소 및 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5. 양자클러스터의 대학, 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하고, 양자전략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양자클러스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31조(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의 양자클러스터계획 수립 이후 양자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자클러스터계획의 시행을 위한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(이하 "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"이라 한다)을수립하여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를 지

정할 수 있다.

- ②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양자클러스터의 명칭 · 위치 및 면적
- 2. 양자클러스터계획과의 부합성
- 3. 양자클러스터 개발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
- 4. 양자클러스터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의 명칭, 위치, 면적
- 5. 개발사업의 시행방법(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)
- 6. 재원조달의 방법과 계획
- 7. 입주기업 및 연구소,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시·도지사는 제30조의 양자클러스터계획 수립 이후 양자클러스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양자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결쳐 있는경우에는 관할 시·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

때에는 관할 구역 내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·도지사의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양자클러스 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,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다.
-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·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⑧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, 시행,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.
- 제32조(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과학기

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.
- 제33조(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양자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, 양자전략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있다.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1. 양자클러스터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.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나 양자클러스터 개발사업 시 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양자클러스터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
 -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 - ②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,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31조제6항 중 "지정"은 "해제"로 본다.
- 제34조(양자클러스터 지정해제의 의제) ① 제31조에 따라 양자클러스

터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양자클러스 터를 전혀 조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31조제 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31조제6항 중 "지정"은 "해제" 로 본다.
- 제35조(양자클러스터 성과 평가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양자클러스터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, 재정적인 지원을 달리하거나 양자클러스터의 유지, 지원 규모의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,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36조(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양자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(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. 이 하 "입주기업"이라 한다)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기술 개발,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연구·기술 개발

시설, 진흥 시설, 실증화 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5장 국제 협력

- 제37조(국제협력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진흥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
 - 2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수출, 공동 개발·구축, 해외 홍 보활동
 - 3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표준화
 - 4. 양자기술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
 - 5. 양자기술 관련 인력의 해외연수 지원
 - 6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
 - 7. 양자기술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
 - 8. 양자기술 관련 전시회 · 학술회의의 개최, 참가 및 국내유치 지원
 - 9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양자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38조(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) 정부는 양자기술의 개발 및 이전 등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

위하여 국내 양자기술 분야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.

- 제39조(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 내 양자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·활용하여 양자 기술 연구개발 촉진하고 양자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 - 1.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양자기술 연구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
 - 2.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
 - 3. 해외 우수기술인력과 관련된 주거·교육·문화·의료 등의 지원
 - 4.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·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0조(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양자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(이하"해외양자연구센터"라 한다)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수 있다.
 - 1.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

- 2.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연구인력과 연계한 국내 인력 에 대한 연수·훈련 및 고용
- 3. 해외양자연구센터의 입지(立地) 지원
- 4. 그 밖에 해외양자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6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

- 제41조(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)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핵심기술의 개발 등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사업목적, 규모,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으로서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「국가재정 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 할 수 있다.
- 제42조(세제지원 등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,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양자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 활동에 필요한 소재, 부품, 장비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양자연구센터, 양자연구소,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,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「관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7장 특별회계

- 제43조(양자기술 특별회계의 설치)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그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양자기술 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제44조(회계의 운용·관리) ①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·운용한다.
 -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.
 - ③ 세출예산의 배정·자금운영·결산, 그 밖에 회계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.
- 제45조(세입ㆍ세출)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-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(預受金)
 - 3. 제1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
 - 4.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
 - 5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의 예

수금

- 6. 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
- 7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
- 8.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
- 9.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
- 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수입금
-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·투자·보조 또는 융자 가. 연구개발 지원
 - 나. 연구장비 구축, 실증 및 성능검증 등을 위한 연구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원
 - 다. 인력양성, 문화확산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지원
 - 라. 표준화, 특허, 기술이전, 기술사업화 등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에 대한 지원
 - 마. 창업 및 벤처 등 기업 육성 및 펀드 출자 · 투자 등 자금지원
 - 바.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·합병, 기술제휴, 기술도입과 관 련된 지원
 - 사. 실증, 시범사업,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지원
 - 아. 양자 연구소 등 거점시설에 대한 지원

- 자. 국제 협력 촉진 등을 위한 지원
- 차. 계획수립, 정책연구, 실태조사, 전문가 단체 등에 대한 지원
- 카. 특별회계의 조성, 운용,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차입 원리금의 상환
- 타. 그 밖에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
- 2.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·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
- 3.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
- 4.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
- 제46조(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) ①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 - ②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 - ③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
- 제47조(예산의 이월 등)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「국가재정법」 제4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

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(移越)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,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.
- ③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(移入)한다.
- 제48조(회계사무의 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.
 - ④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.

제8장 보칙

- 제4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·감독한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5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양자전략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4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·위탁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·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에 따른 양자종합계획과 제13조에 따른 양자인력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

특별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.. 제27조의2.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.

- 제4조(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처분·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- 제5조(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본다.
- 제6조(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양자클러스터로 본다.